창 녕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 관 의 장
선	
람	



제700호 2024. 5. 2.(목)

조 례 ○ 창녕군 조례 제2813호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10 ○ 창녕군 조례 제2814호 창녕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13 ○ 창녕군 조례 제2815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창녕군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19 ○ 창녕군 조례 제2817호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0 ○ 창녕군 조례 제2818호 창녕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71 칙 규 ○ 창녕군 규칙 제1211호 창녕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109 고 시 공 卫 ○ 창녕군 공고 제2024-779호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2 ○ 창녕군 공고 제2024-788호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6 ○ 창녕군 공고 제2024-798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58 ○ 창녕군 공고 제2024-799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73

조 례

창녕군의회에서 의결된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

2024년 5월 2일

창녕군 조례 제2811호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창녕군세의 감면·추징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녕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최초로"를 "먼저"로 한다.

제5조 및 제9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로, "25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으로, "500원"을 "1,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혂 햀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제1조(목적) ----- 「지방세특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창 례제한법」에 따라 창녕군 군세 녕군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 한----- 건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발전-----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 제32 대한 감면) ①-----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 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 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 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 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 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 로 등록하거나 「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 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 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 · 직 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형제·자매 또는 직 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 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 지 면제한다.

1. · 2. (생략)

② · ③ (생 략)

제5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제11조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보

<u>먼저</u>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u>한</u>다.

제9조의4(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이 군세를 납 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군세에 대한 가산금 등을 2021 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② 제1항에서 "가산금 등"이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가산금
- 2.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른 중가산금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지방세징 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3회 를 말한다)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까지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삭 제〉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지방세기본법」제 세액 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 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세(수 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 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 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군세 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 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 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500원</u>

〈신 설〉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 500원
-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u>방식에 의한-----</u> ----- 1,000원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
 -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 위 공제

조 례

창녕군의회에서 의결된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

2024년 5월 2일

창녕군 조례 제2812호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지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	
의 송달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	
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	
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 당	
세액이 <u>30만원</u> 미만이면 일반우	<u>45만원</u>
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조 례

창녕군의회에서 의결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인

2024년 5월 2일

창녕군 조례 제2813호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중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의4 중 "재산관리담당"을 "공유재산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중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혅 행 개 정 안 제4조의3(구성) 영 <u>제7조의2제1항제</u> 제4조의3(구성) <u>「공유재산 및 물품</u>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3호에 따른 심의위원 자격요건은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 ·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분 야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 람으로 한다. 제4조의4(간사) 심의회에 사무를 처 제4조의4(간사) ----------- 공유재산 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재산관리 담당으로 한다. 팀장----.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 〈삭 제〉 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유재 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 에 관한 사항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 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공유재산에 대한 〈삭 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 지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

 에 따른 경우

5.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u>기부채납</u>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제17:	조(무기	상사용	기간)	 	
 量	받은	날을	기준	- <u>사용허</u> 한다.	 <u>기</u>

조 례

창녕군의회에서 의결된 창녕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

2024년 5월 2일

창녕군 조례 제2814호

창녕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녕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로 한다.
- 제2조제5호 중 "생업자금"을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자활근로사업"을 "자활근로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기금의 운용수익
 - 8. 국고보조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조(기금의 용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 중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 2.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 3. 자활교육장 등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 4.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활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으로 한다.
- 제5조제1호 중 "법 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로, "영 제3조의2"를 "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3조제5호"를 "영 제26조의4제9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3조제2호"을 "영 제26조의4제4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한다.

제13조 중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을 "「창녕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했 혂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 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 • 운 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 4. (생 략)
-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 자수입
- 6. 자활근로사업 실시 결과 발 📗 생하는 수익금
-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 익금

〈신 설〉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 도에 사용한다.

- 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 전
-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ġ}-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민기</u> 제1조(목적) -----<u>「국민기</u> 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 1. ~ 4. (현행과 같음)
- 5. 기금-----
- 6. 자활근로의 -----
- 7. 기금의 운용수익

8. 국고보조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제3조(기금의 용도) 「국민기초생 <u>활 보장법 시</u>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 로그램 지원사업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 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 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 하에 한한다
-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u>① 〈삭</u> 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일로 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 ② (생략)
- ③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 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 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 운용 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 ---- 「지방재정법」 제34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 ④·⑤ (생 략)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 2.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자 활근로사업단의 사업 운영에 필 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3. 자활교육장 등 기반시설 운 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활 지원 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

- ② (현행과 같음)

3항-----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제5조(지원대상) ------

- 음 각 호와 같다.
- 1. <u>법 제2조제2호</u>에 따른 수급 자 및 <u>영 제3조의2</u>에 따른 차 상위계층
- 2. ~ 4. (생 략)
- 5. <u>제3조제5호</u>에 따른 자활사업 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 행 할 수 있는 개인·기관· 단체

제6조 ~ 제7조 (생 략)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 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 ④ (생 략)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 ① · ② (생 략)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 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 제11조 (생 략)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u>3월</u>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u>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u>
호법 제2조제10호
2.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26조의4제9호
제6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영 제26조의4제4호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
자금의 이차보전)
①·② (현행과 같음)
3
<u>자활기업이</u>
제10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u>80일</u>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u>「창녕군</u>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리에 관한 규칙」

조 례

창녕군의회에서 의결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창녕군 8개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인

2024년 5월 2일

창녕군 조례 제2815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창녕군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창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 제2조(「창녕군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녕군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조(「창녕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녕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창녕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창녕군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매장문화재"란"을 ""매장유산"이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5조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4조(「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 례」의 개정) 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창녕군 우포따오기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녕군 우포따오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조(「창녕군 군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녕군 군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 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7조(「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개정)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 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8조(「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	------------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창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답례품의 종류 및 발굴 등) ①	제3조(답례품의 종류 및 발굴 등)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③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	
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 13. (생 략)	12. · 1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조(「창녕군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창녕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	
용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5
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	
된 시설물 및 <u>문화재</u> 등의 위치	<u>국가유산</u>
표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창녕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데」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창녕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창녕군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u>매</u> <u>장문화재</u>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매장</u> <u>유산</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매장문화재"란 땅속이나 물 밑 그 밖의 사람의 눈에 띄지 않 는 곳에 묻혀 있는 유형의 문화 적 유물 또는 유적을 말한다.	1. <u>"매장유산"이란</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u>매장문화재</u> 보호를 위하여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3조(지원대상) <u>매장유산</u>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내용)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u>매장문화재</u>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따라 <u>매장문화재</u>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필	1. · 2. (현행과 같음)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u>매장유산</u>

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 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현장입회비 지원 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년 월일		(남, 여))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전화)	
계좌번호		신청 금액	급 (급	원 원)	
2 건축신고 현황	}				
소 재 지	경남 창녕군	읍·면	리	번지	
면 적	대지면적 :		m²		
단 역	건축연면적 :		m²	·	
용 도					

「창녕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 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

<u>구비서류</u>	신청인 제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건축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	
	<u>서 사본</u>	주민등록표 초본
	2현장입회 결과보고서 및 비용납	1 5047 75
	<u>입 서류</u>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 . . 성명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된 개인정보(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는 창녕군 <u>매장문화재</u>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 신청 용도로만 사용되며, 보유기간은 5년 또는 제공자의 삭제 요청시까지 입니입 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현장입회비 지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20 . . .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

현장입희비 지원 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년 월일		(남, 여))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전화)					
계좌번호		신청 금액	급 (급	원 원)					
2 건축신고 현황	}								
소 재 지	경남 창녕군	읍·면	리	번지					
면 적	대지면적 :		m²						
전 역	건축연면적 :		m²						
용 도									

「창녕군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u>구비서류</u>	1.건축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 서 사본 2.현장입회 결과보고서 및 비용납 입 서류	주민등록표 초 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 . . 성명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된 개인정보(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는 창녕군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 신청 용도로만 사용되며, 보유기간은 5년 또는 제공자의 삭제 요청시까지 입니입 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현장입회비 지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20 . . .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 관리대장

				신청인	인적사형				지원사	항	
연번	신청 일	평 성	주소	생년 월일	연락처	성별 (남, 여)	계좌번호	일자	지원 여부	지원 금액	비고

【별지 제2호서식】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 관리대장

<u>매경파진 조호를</u> 되면 환경함의 시원 현대대경											
		신청인 인적사항							지원사	항	
연번	신청 일	성명	주소	생년 월일	연락처	성별 (남, 여)	계좌번호	일자	지원 여부	지원 금액	비고

제4조(「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동등재추진단의 구성) ①	제4조(공동등재추진단의 구성) ① -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업무	
를 추진하기 위하여 <u>문화재청장</u>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공동등재추	
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창녕군 우포따오기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따오기 관리 위원회 구성) ①	제8조(따오기 관리 위원회 구성)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환경부	3
및 <u>문화재청</u> 관련업무 담당사무	<u>국가유산청</u>
관, 경상남도 관련업무 담당사무	
관, 낙동강유역환경청 관련업무	
담당과장, 국립습지센터장, 우포	
생태따오기과장이 된다.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창녕군 군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 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	1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	
에서 정하는 야생생물 및 멸종	
위기 야생생물 중 동물, <u>「문화</u>	,
재보호법」제25조 에서 정하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	<u>관한 법률」 제11조</u>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7조(「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1
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	
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	
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 「소방 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u>「문화재보</u>	, <u></u>
<u>호법」</u> 에 따른 <u>문화재 수리</u> 공	등에 관한 법률」국가유산
사를 말한다.	<u>수리</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8조(「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별표 2]				
재난수	습 주관부서(제4조제2형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		i	ı				ŀ
18.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18 국가유산청	국가유~	<u>산</u>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		!	ŀ				ı

조 례

창녕군의회에서 의결된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

2024년 5월 2일

창녕군 조례 제2816호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을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을 "위원회, 시민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으로, "군청·읍면사무소"를 "군청, 읍·면사무소"로, "군홈페이지"를 "군 홈페이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자료의 제출을"을 "자료의 제출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을 "열람 기간 동안 군 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열람기간동안 군 홈페이지 의 게재로 이에 갈음"을 "열람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게재로 대체"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를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옥과 가옥 사이의"를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지경계 간"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제27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로 한다.

- 1.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로 도로 폭이 6미터 이상으로 개설되었거나, 「도로법」 제6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따라 건설·관리계획 및 도로정비계획이 고시된 도로로 신청연도 기준 3년 이내 「도로법」 제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따라 각각 건설·관리계획 및 도로정비계획된 도로의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지정리 및 토지대장 상 경 지정리(구획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의2호"를 "별표 1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역안에서 거주하는"을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으로, "(신출"을 "(신축"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를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멧쌓기"를 "메쌓기"로, "초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으로 한다.

제21조제2호 중 "도로의"를 "도로"로, "형질변 경허가"를 "형질변경허가"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 제2호"를 "별표 1의2제2호마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각통로 차폐"를 "통로를 막 거나"로, "아니 할"을 "아니할"로 한다.

제25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주택법」제16조"를 각각 "「주택법」제15조"로 한다.

제35조제4호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3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산녹지지역에 건축"을 "건

축"으로, "경우 건폐율은 60퍼센트"를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에서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에서 40퍼센트"로 한다.

제46조의2의 제목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기준)"을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제5항"을 "법 제75조의3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을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9호 중 "이하"를 "이하(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문화·환경·도시·건축·건설·농림"을 "환경· 산림·도시·건축·건설·농림"으로 한다.

제54조의2 전단 중 "수 없다"를 "수 없고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4조의2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위원회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일 또는 2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 2. 부결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입안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1호 중 "영 제55조제5항,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6 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심의"를 "영 제57조제4항, 제25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한다.

별표 3,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6, 별표 18, 별표 2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인·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3호 관련)

- ※ 시행령 별표 4 제2호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를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한다)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을 제외한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

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 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 (과자 제조업도 포함한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 다. 제10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군계획조례로「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및「소음·진동관 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 는 그 건축 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라.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

차장

-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7호 관련)

- ※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 아목, 자목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하는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에 포함 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경계가 도로에 접하는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에 포함 한다) 거리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8호 관련)

※ 시행령 별표 9 제1호의 가목, 나목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하는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에 포함 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경계가 도로에 접하는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에 포함 한다) 거리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9호 관련)

※ 시행령 별표 10 제1호 나목, 파목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하는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에 포함 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경계가 도로에 접하는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에 포함 한다) 거리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0호 관련)

※ 시행령 별표 11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 축할 수 없는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하는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에 포함 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하는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에 포함 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1호 관련)

※ 시행령 별표 1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정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정한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6호 관련)

※ 시행령 별표 17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 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 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 과병원 및 한방병원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

- 가.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 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군의 관할구 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8호 관련)

- ※ 시행령 별표 19 제2호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 업용에 한정한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 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5 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가.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 나.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 다.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라.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1호 관련)

- ※ 시행령 별표 2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 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군수가 입지 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혂 햀 아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 (1) -----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 위원회, 시민단체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2)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 -----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청 · 읍면 전-----군청, 읍·면 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 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 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 리) ① -----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자료의 제출을-----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 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 · 면사 열람 기간 동안 군청,-----무소의 게시판에 군 관리계획의 입 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로서 폐기물 (2) -----처리시설 · 화장장 · 쓰레기처리장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 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 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 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 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 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 람기간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8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 제18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 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 준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도로(「도로법」및 「농어촌도로 | 정비법」에 따른 도로로 왕복 2 차선(폭 6미터)이상 개설이 완료 되었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를 말한다) 경계에서 직선거 리로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 니할 것

2. 가옥과 가옥 사이의 거리가 50미

<u>람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게재로</u> <u>대체</u> .	
<u>람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게재로</u> <u>대체</u> .	
<u>람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게재로</u> <u>대체</u> .	
<u>람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게재로</u> <u>대체</u> .	
<u>람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게재로</u> <u>대체</u> .	
<u>람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게재로</u> <u>대체</u> .	
<u>대체</u>	<u>열</u>
<u>대체</u>	람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게재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 1.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 법」에 따른 도로로 도로 폭이 6 미터 이상으로 개설되었거나, 「도로법」 제6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따라 건설ㆍ관 리계획 및 도로정비계획이 고시 된 도로로 신청연도 기준 3년 이 내 「도로법」 제6조 및 「농어 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따라 각각 건설·관리계획 및 도로정비 계획된 도로의 경계에서 직선거 리로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 니할 것
- 2.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터 이내로서 10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주거밀집지역에서 250 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3. <u>「문화재보호법」제27조</u>에 따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창녕우 포늪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1,000 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4. <u>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u> 집단화된 경지정리 지역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

5. · 6.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u>경우에는 제1항을</u>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 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호 제2호가목 (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1. · 2. (생략)
 -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3. <u>「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u> 한 법률」제13조
4. <u>「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u> 따른 경지정리 및 토지대장 상
경지정리(구획정리)된 농지에 입
<u>지하지 아니할 것</u> 5.·6. (현행과 같음)
② <u>어느 하나에 해당하</u> 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기준을
<u>적용하지 않는다</u> . 1.~4. (현행과 같음)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 서의 건축물의 건축)
별표 1의2
 1.·2. (현행과 같음) 3

주택의 부지경계 간 ------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 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 설의 건축(신출을 제외한다)을 목 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생 략

제20조(<u>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u>)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 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 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1.~5. (생략)
-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u>멧쌓기</u>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u>초압분산을 위한 뒷채움</u>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다 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 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 1. (생략)
 - 2. 운반트럭의 진출입 <u>도로의</u> 개설

<u>지역 안에서 거주하는</u>
(신축
4. (현행과 같음)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
<u> </u>
1.~5. (현행과 같음)
6
메쌓기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
,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1. (현행과 같음)
2 도로

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u>형질변 경허가</u>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 4. (생략)

-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기준) 영 <u>별표 1 제2호</u>에 따라 물 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3.~5. (생략)

- 제25조의2(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 축하려는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u>제1</u> 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u>제1</u>
 <u>6조</u>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9. (생략)

제35조(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u>형질변경허가</u>
3. • 4. (현행과 같음)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기준) 별표 1의2제2호마목
1. (현행과 같음)
2
<u>통로를 막거나</u>
3.~5.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대상)
1
<u>제1</u>
<u>5조</u>
2
<u>제1</u>
<u>5조</u>
3.~9. (현행과 같음)
제35조(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
태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영 제7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 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 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u>격리병원·정신</u>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14. (생략)

15. 〈신 설〉

- 제38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기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 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 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 제14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
 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
 5호의 숙박시설
 - 2. 제14호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
 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
 6호의 위락시설
 - 3. 제14호제3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 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 장 및 처리시설

제4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 저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생략)

②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건폐

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생략)

- 제46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 | 제46조의2(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 서의 건폐율 완화 기준) 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 폐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 략)
 -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 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8. (생략)
 -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 21. (생략)

제52조(구성) ①・② (생 략)

-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 환경 · 도시 · 건축 · 건설 · 농림 관련 과장으로 한다.
- ④·⑤ (생 략)
- 의의 제한) 영 제114조제5호에 따 라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 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 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율은 생산녹지지역에서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에서 40퍼센트

1.~3. (현행과 같음)

- 서의 건폐율 완화 기준) 법 제75조 의3제2항에-----
 - 1. (현행과 같음)
 - 2.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 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1.~18. (현행과 같음)
- 19.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은 125 퍼센트 이하)

20. · 21. (현행과 같음)

제5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환경· 산림 · 도시 · 건축 · 건설 · 농림 관련 과장으로 한다.
- ④·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 제54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 의의 제한) -----

없고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 동일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 하고, 위원 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 60일 또는 2회를 초과하여 심 의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제5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제55조(분과위원회) ①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 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 제55조제5항,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6조에 따른 개발행위 에 대한심의 또는 자문

2. · 3. (생략)

② ~ ⑤ (생략)

제56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 ②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 주관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생략)

【별표 3】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위원회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60일 또는 2회를 초과하 여 심의할 수 있다.
- 2. 부결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입안 하는 경우

-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u>영</u>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u>영</u> 제57조제4항, 제25조에 따른 개 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2. 3.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56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 음)
 - 의 팀장이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3】

있는 건축물(제29조제3호 관련)

- ※ (생략)
- 1.~10. (생략)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 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 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2.~18. (생략)

【별표7】

건축물(제29조제7호 관련)

- ※ (생략)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 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 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 m(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하 는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 에 포함 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 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 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 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하는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에 포함 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3호 관련)

- ※ (현행과 같음)
- 1.~10. (현행과 같음)
- 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과자 제조업도 포함한 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2.~18. (현행과 같음)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7호 관련)

※ (현행과 같음)

1
미터
2
<u>미터</u>

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8호 관련)

※ (생략)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 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 m(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하는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에 포함 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 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 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하는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에 포함 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3. (생략)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9호 관련)

※ (생략)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 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 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 별 표 8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 연축물(제29조제8호 관련)
※ (현행과 같음)
1
미터
2
미터
3. (현행과 같음)
【 별 표 9 】
- -
그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9호 관련) ※ (청체기 기요)
※ (현행과 같음)
1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 m[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하 는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 에 포함 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 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 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 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하는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에 포함 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생략)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0호 관련)

※ (생략)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 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 m[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하는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에 포함 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 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 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미터
2
비터
<u> </u>
0 (원레기 기수)
3. (현행과 같음)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0호 관련)
※ (현행과 같음)
1
미터
2
ر → ا → ا
<u>미터</u>

(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하는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에 포함 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 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1호 관련)

- ※ (생략)
- 1.~6. (생략)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 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 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8.~10. (생략)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6호 관련)

- ※ (생략)
- 1.~4. (생략)
- 5. (생략)

가. · 나. (생 략)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 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 업공동판매시설

6.~9. (생략)

10. (생략)

가.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

 -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1호 관련)

- ※ (현행과 같음)
- 1.~6. (현행과 같음)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 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 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법 | -----

8.~10. (현행과 같음)

【별표 16】

건축물(제29조제16호 관련)

- **※** (현행과 같음)
- 1.~4. (현행과 같음)
- 5.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6.~9. (현행과 같음)
- 10. (현행과 같음)
- 가.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

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 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생 략)

11.~13. (생략)

【별표 18】

건축물(제29조제18호 관련)

※ (생략)

1.~8. (생략)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 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 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라. (생 략) 10.~16. (생략)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1호 관련)

※ (생략)

1.~8. (생략)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7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 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현행과 같음)

11.~13. (현행과 같음)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8호 관련)

※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5 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라. (현행과 같음) 10.~16. (현행과 같음)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1호 관련)

※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삭 제〉

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 례

창녕군의회에서 의결된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

2024년 5월 2일

창녕군 조례 제2817호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창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관리위탁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1. 도시재생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 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제2항의 수의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조합 정관
- 2. 조직도 및 인력배치
- 3. 시설 운영 · 관리 규정
- 4. 이용료 징수 및 수입사용계획

제3조제1항 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거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임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 분석 · 평가 및 보고
- 7.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 · 관리 지원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30조의2제2항"을 "법 제30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을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 2. 제3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 4.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들이 구성한 단체

제6조를 제11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주민의 참여) 창녕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 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

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한다.

제9조(지원 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시행된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효과 지속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필 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시설 등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제2조(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u>제3조제5호</u> 에서 "조례로 정하	제3조제6호
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	
설을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
	<u>설</u>
<u>〈신 설〉</u>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
	용하는 시설로서 창녕군수(이
	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재
	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u>〈신 설〉</u>	제2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
	탁) 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
	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
	여 시설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
	<u>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특</u>
	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의 자에 대해 수의계약의 방식

제3조(도시재생지원센터) ① 「도 저 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 명 등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으로 할 수 있다.

- 1. 도시재생사업 내의 공동이용 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 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 을관리협동조합 등
-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제2항의 수의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조합 정관
- 2. 조직도 및 인력배치
- 3. 시설 운영·관리 규정
- 4. 이용료 징수 및 수입사용계획

세3조(도시재생지원센터) ①	<u>「도</u>
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u>제11조제1항</u>	
②	

가 위촉한다.

③ ~ ⑤ (생 략)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5. (생략) 〈신 설〉

〈신 설〉

6. (생략)

제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2 항에 따라 공익 목적의 기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을 말한다.
- 1. ~ 3. (생략)
-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공 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
- 대상은 영 제3조제1호부터 제4

위촉하거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임명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1. ~ 5. (현행과 같음)
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ㆍ
분석·평가 및 보고
7.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관리 지원
<u>8</u> . (현행 제6호와 같음)
제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법 제30조의2제2항

1. ~ 3. (현행과 같음)

-----.

4. ----- 도시재생 활성 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

②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

<u>호까지의 시설과 이 조례 제2조</u> <u>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u> 다.

③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창녕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 2. 제3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 센터
-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 기업
- 4.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등 주민들이 구성한 단체

〈삭 제〉

제6조(주민의 참여) 창녕군 주민 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 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 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 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 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u>있다.</u>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 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 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 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

〈신 설〉

〈신 설〉

<u>〈신 설〉</u>

- 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창녕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 ① 군수는 법 제 25조에 따라 시행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효과 지속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 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 은 사업주체에게 사업과 관련하 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

	거나 서류·시설 등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u>제6조</u> (생 략)	<u>제11조</u> (현행 제6조와 같음)

조 례

창녕군의회에서 의결된 창녕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인

2024년 5월 2일

창녕군 조례 제2818호

창녕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및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창녕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
- 2. "협의회" 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 사회 창녕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

사가 창녕군 관내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 2. 사회봉사 활동 및 복구 지원 사업
- 3. 보건의료 · 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 4.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은 「창 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 무상대부)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조(포상) 군수는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창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 례

창녕군의회에서 의결된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

2024년 5월 2일

창녕군 조례 제2819호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 ④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 ④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하며,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 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⑥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 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7조(특별위원회) ①·② (생 략)	제7조(특별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 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 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u> </u>	④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 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u>〈신 설〉</u>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 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 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 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하며,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u>의</u> 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 임한다.

〈신 설〉

③ (생략)

제9조(위원의 선임) ① · ② (생 략) 제9조(위원의 선임) ① · ② (현행과

〈신 설〉

- 을 들어야한다.
- ⑥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

-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현행과 같음)
- 제9조(위원의 선임) ①·② (현행괴 같음)
 - ③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규 칙

창녕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

2024년 5월 2일

창녕군 규칙 제1210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창녕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별표 2, 별표 5의2, 별표 5의3, 별지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5의2의 개정규정 중 국가유산 관련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4조제5항, 제6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

	-n	
	계급	연 구 관·연 구 사
직렬	직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국가유산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미 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국 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자
	국 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자
편사연구	편 사	역사학을 전공한 자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	기 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자
	전 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자
	전 자	
	금 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자
	섬 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자
	화 공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
	화 학	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자
	물 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자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연 구 사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자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자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자
	산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자
	원 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자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 을 전공한 자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
	농 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 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농식품 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자
녹지연구	임 업 조 경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 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1	

	اراد س اراد	
	계급	연 구 관·연 구 사
직렬	직류	
수의연구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자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또는 생물학을 전 공한 자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자
보건연구	의 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자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자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 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 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시설연구	토 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자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자
방재안전 연구	안전관리	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 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 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재난관리	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비 고: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 함한다)를 말한다.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787 712	·기둥분야 사석중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	정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	산	전 산 데 이 터	기 사 : 산업기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冷	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증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능 장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능사: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야 금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잠 업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사 : 산업기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사 : 산업기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능 장 :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산업기사 :	산림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사: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일반수산	기 사 : 산업기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식품
		기 등 사 :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양식

직 렬	직 류	대상 자격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기 능 사 :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상 자격증
		수 질	기 사 : 산업기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 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사 : 산업기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폐기물	기 사 : 산업기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정 비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시	石	도시계획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사 : 산업기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사 : 산업기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 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z) 과	z) =		nl 사 키 커 즈
직 렬	직 류	_	대 상 자 격 증
	지 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설 계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バイ: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 :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신기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술		
조리	조리	기 능 장 : 산업기사	조리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 능 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목어)
위생	사역	기 능 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전기 정기 정기고사 도모 거츠성비 거츠 스바서비(정기보아
		기 사: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기 능 사 :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1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 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기.ㄱ.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법무행정	변리사(4)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감정평가사(3)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작업상담사급 (10)	공인노무사(3) 작업상담사(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 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 관리자(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 관리자(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 관리자(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시(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데이터		제작전문가(9)	제작전문가(6)	제작전문가(3)	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기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시(3) 1급 기관시(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시3급	
	방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문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발사성자(12) 물리카당사(12) 지과위생사(12) 지과위생사(12) 기과위생사(12) 방사성취급동위 원소취취급 기록시선자(12) 방사성취취급 기록기사(13)	일삼병(8) 일삼병기록사(8) 방사선로사(8) 물리고기장사(8) 지고기왕자(8) 지고의치성동(8) 지학사선(8) 사선(일본)(3) 방사선(일본)(3) 방사선(일본)(3) 방사선(일본)(3) 방사선(일본)(3)	일삼년(5) 일삼년(5) 일삼년(5) 일부사(5) 일본(5) 일본(5) 일본(6)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임삼병기국사(2) 임삼병기국사(2) 발사선로사(2) 발사성로공사(2) 기교기생사(2) 기교기생사(2) 기교의	사 사 의록사 리록사 리록사 의사 의 방식 의 방식 의 사 의 사 의 사 의 사 의 사 의 사 의 사 의 사 의 사 의 의 의 의
의	무	일반의무	원소(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 제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ই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년진료 -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수 질 대 기 페기물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황경측정본석사(7) 청우시설운영관리 사 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청수시설운영관리 사 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청수시설운영관리 사 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 사 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 사 3급
항 -	자	일반항공	유숙용조종사 수업용조종사(5) 항공기관사(10) 항공고통관제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장비사(10) 항공장생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공장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기관사(3) 항공고통관제사(3) 항공고통관제사(3) 항공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기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솔사 사업용조송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송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12)	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9)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6)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J	디자인	건축사(5)	건축사			되고소리 400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시(5), 영양시(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1	١٠-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조	년 무 -	간호 조무					간호조무사
운	' 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1. (삭제)

-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 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 5. 문선적들의 경구 기념을 기기는의 하고 다하고 그 그 도 도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4조제10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 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5 <u>호</u>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 기 제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수 있다.
- 2.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4.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 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21-1	(한글)				사 진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왕반신 사진
주민등록 번 호		_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추 소	(🕈)			·	·	·	이어야 함]
전자우편		복수	·국적				수입증지 불이는 곳
전 화		휴대	전화				

\	

※응시번호		응 시 표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생년월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20 년	월 일 ○○○장 ®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의 사 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들(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압니다.	보완사항	를(슬)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천연색 사진 (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 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다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자)	
생년월일	_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争)			
전자우편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				

	<u> </u>		\
\	(I)	Ή,)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卿

주 의 사 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4호서식]

				임용:	후보자등	록원	면서(원본)	③ 응 및	시 연 . 회		()년 <u></u>	도제 회
※등록번호	제	회	번						응 응	지구(기 시 번	기호) 호		지구	번
※ 급			직						직	급	별		급	직
	(한글)						② 희망지역	4					·심사	
① 성 명	(한문)						제1지역		시 군	시	·진대조		서류	심사
	(영문)				제2지역		시 군	1 1			(1)			
④ 주 소														
전화번호 : ⑤ 연 락 처									(사	진부착)				
	휴 대 폰 :													
⑥ 병 역			С	병역필 / (○ 면제 / (ГП	필 / ○ Φ	ᅧ성						
					⑦ 학		럳]						
부터			ル ス	지	Ž	학	력			전공·부문·과목				
		⑧ 자 경	격 면	. 허					9	상	벌			
연 월 일	!		ৰ	<u>z</u>	별		연 월	일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か 2	य		경	력	사	항-				발 령 2	ig .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 명	연락처			
	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년	월 일			
		출원자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 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〇〇과

- 3. 구비서류
 -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 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 4. 등록원서 제출방법
 -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회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 5. 원서기재요령
 -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72. 1. 31과 같이 약기 하다.
 -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 ⑨ 상 벌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 ① 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 ② (생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 ② (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 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4조제5항, 제6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직류	연구관 · 연구사
학예 연구	학예 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 ② (현 행과 같음)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 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사람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4조제5항, 제6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직류	연구관 · 연구사
학예 연구	학예 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국가유산관리학 , 문화유적학, 인 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 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 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 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 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 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l4조제l항 관련)

-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 시험등 응시자격요건
-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시설	건축	건축사(5) 문화재 수리기 술자 (보수기 술자)(12)	건축사 문화재 수리기 술자 (보수기 술자)(9)	문화재 수리기 술자 (보수기 술자)(6)	문화재 수리기 술자 (보수기 술자)(3)	문화제 수리기 술자 (보수기 술자)

비고: 1 ~ 4 (생략)

〈신 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 시험등 응시자격요건
 -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시설	건축	건축사(5) 국가유산 수리기 술자 (보수기 술자)(12)	건축사 국가유산 수리기 술자 (보수기 술자)(9)	국가유산 수리기 술자 (보수기 술자)(6)	국가유산 수리기 술자 (보수기 술자)(3)	국가유산 수리기 술자 (보수기 술자)

비고: 1 ~ 4 (현행과 같음)

5. ()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 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 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 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 어야 한다.

[별표 5의3]

항 관련)

-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비고
 -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 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 에 포함시킬 수 있다.
 - 2. (생략)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 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 3 (생략)
	6호	1. (생략) 1.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 4 (생략)
한시 임기제	7호	1. (생략)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 4 (생략)
	8 <u>ই</u>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 는 사람 2 ~ 3 (생략)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 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4조제10 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4조제10 항 관련)

※비고

1
 행정안전부장관

- 2. (현행과 같음)
-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	
시간 선택제 임기제	라급	1.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	
	6호	1. (현행과 같음) 2
한시 임기제	7ই	1. (현행과 같음) 2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3 ~ 4 (현행과 같음)
	8 <u>ই</u>	1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2 ~ 3 (현행과 같음)

※비고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 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한다.	1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 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 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u>행정</u> <u>행정</u> <u>안전부장관</u>
3. ~ 4. (생략) <u>〈신 설〉</u>	3. ~ 4. (현행과 같음)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라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를 졸업한 사람
한시		
임기제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를 졸업한 사람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라급	1 <u>졸업자동</u>
	마급	l <u>졸업자등</u>
한시		
임기제	9호	1 <u>졸업자둥</u>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 〈삭 제〉 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 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 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비고

- 2. ~ 4. (생략)
 - 〈신 설〉

- 1. ~ 3. (현행 2. ~ 4.과 같음)
- 4.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1. 공채 · 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 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생략)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략)

(생략)	
(생략)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의 사 항

1. ~ 3. (생략)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 5. (생략)
- 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별지 제3호서식]

1. 공채 · 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 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사 진
	 모자 등을 쓰지 않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 진 모자 등을 쓰지 않은 (현행과 같음)

주 의 사 항 1. ~ 3. (현행과 같음)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 5. (현행과 같음)
- 6.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6. 사진: ----- 모자 등을 쓰지

- 7. 수입증지
-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 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 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 응 시 원 서 (생략)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 5. (생략)
- 6. 수입증지
-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 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7. 수입증지
- (현행과 같음)

--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 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 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 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 응 시 원 서 (현행과 같음)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 5. (현행과 같음)
- 6. 수입증지
- (현행과 같음)

--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 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 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

- 107 -

[별지 제4호서식]

<u>임용후보자 등록원서(원본)</u> (생략)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 1. ~ 2. (생략)
-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 ~ (9). (생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 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이 신원 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 함판 5매가 소요됨)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 -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 -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생략)

4. ~ 5. (생략)

[별지 제4호서식]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원본) (현행과 같음)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 1. ~ 2. (현행과 같음)
- 3. 구비서류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 ~ (9). (현행과 같음)

--.

		모자	등을	쓰지	않은	
--	--	----	----	----	----	--

-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4. ~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규 칙

창녕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

2024년 5월 2일

창녕군 규칙 제1211호

창녕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창녕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등) ① 단위부서에서는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보험증서와 정기 검사결과서를 차량 내부에 비치하는 형식으로 게시해야 한다.
 - ② 총괄부서는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7조의2(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등) ① 단위부서에서는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 기 검사를 실시하고 보험증서와 정기 검사결과서를 차량 내부에 비치하는 형식으로 게시해야 한 다. ② 총괄부서는 공용차량의 의무보 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 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고 시

창녕군 고시 제2024 - 7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창 녕 군 수

-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2023. 4. 23.(화)
-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현황

지구명	위치	등급 (점수)	면적(㎡)	경사각	지정사유	관리기관
대산1지구	성산면 대산리 산152-6번지 일원	D(62)	10,290	70°	재해위험도 평가에 따른 지구 지정	창녕군

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예상사업비	사업내용
대산1지구	2025. 1. ~ 2027. 12.	2,200백만원	사면 정비 1식 (영구앵커+옹벽+표면보호공)

- ※ 사업시기. 사업예산, 사업내용은 국·도비 지원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ㅇ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ㅇ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5.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우리군 안전치수과와 협의하여야 함.
- 6. 지형도면 열람 및 문의처: 경상남도 창녕군청 안전치수과(☎ 055-530-1834)
- 붙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
 - 2. 지형도면 1부.
 - 3. 편입용지조서 1부. 끝.

□ 위치도 및 전경사진(대산1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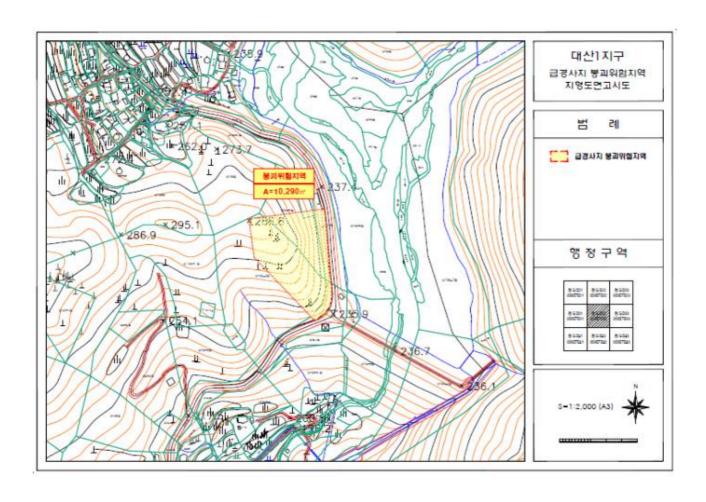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대산리 산152-1번지 일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편입용지조서

일련	=	노 재 ㅈ	I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 유 자	비고
번호	군	면	리	기단	시크	면적(m²)	면적(m²)	성 명	주 소	1 -1
1	창녕	성산	대산	152-2	임	16,989	5,917	권*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	사유지
2	창녕	성산	대산	152-1	임	4,886	2,722	밀양****문중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학산리 ***	사유지
3	창녕	성산	대산	153-4	임	4,848	121	창녕군	-	군유지
4	창녕	성산	대산	152-4	도	4,822	966	창녕군	-	군유지
5	창녕	성산	대산	152-6	도	3,539	564	창녕군	-	군유지
	합	계		필 ス	수	5	5			
	립	77		면	적	35,084	10,290			

고 시

창녕군 고시 제2024-80호

창녕군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등의 변경 및 폐지), 시행령 제13조(도로 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절차) 및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및 의 규정에 따라 창녕군의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2.

창 녕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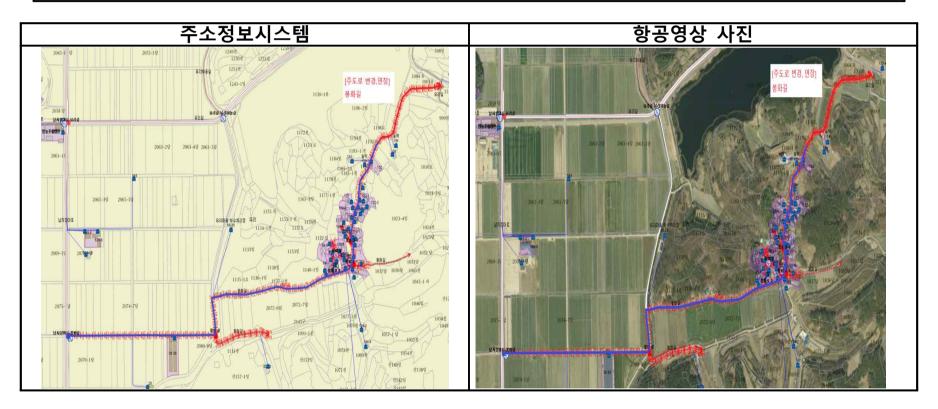
- 1. 고 시 일 : 2023. 5. 2.
- 2. 고시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 4건 (붙임 참고)
- ※「도로명주소법」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으로써, 주민 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생략

4.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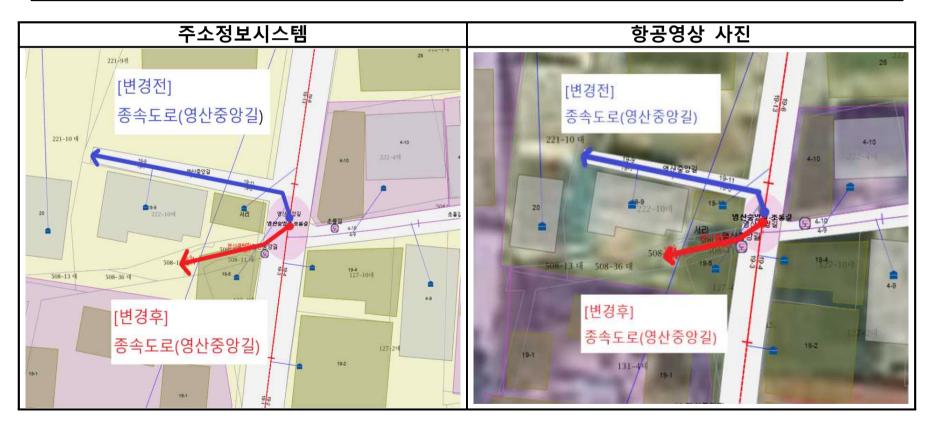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민원봉사과 공간정보팀 (☎055-530-1353~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변경(폐지) 조서 및 현황도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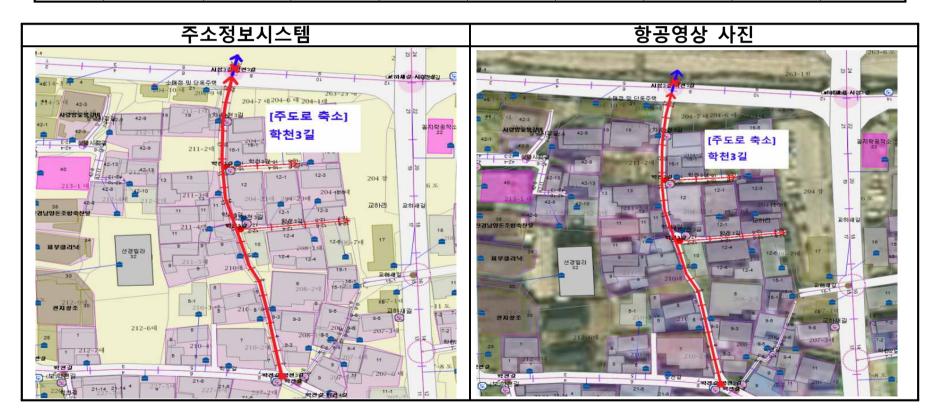
구분	도로명	행정구역	도로구간								
一下正	<u> </u>	8874	기점	종점	길이(m)	폭(m)	기초간격(m)	기초번호	변경사유		
변경 전	봉화길	장마면	유리 2074-1	유리 1018	1239	4	10	1→136	도로구간 연장·변경		
변경 후	오치된	이 마인	유리 1508-1	유리 549-2	1650	4	10	1→166	연장·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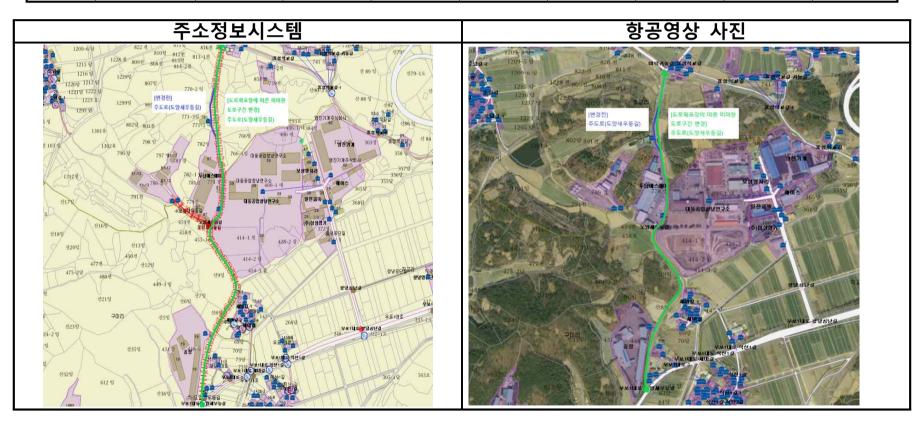
구분	도로명	행정구역	도로구간 덕구역								
' -		0017	기점	종점	길이(m)	폭(m)	기초간격(m)	기초번호	변경사유		
변경 전	영산중앙길	영산면	서리 145-5	동리 70-1	29	3	15	19-5→19-11	도로구간		
변경 후	0100E	822	서리 226-1	서리 508-12	16.5	3	15	19-5→19-11	변경		



구분	도로명	행정구역	도로구간								
1 🗠	0	0017	기점	종점	길이(m)	폭(m)	기초간격(m)	기초번호	변경사유		
변경 전	학천3길	창녕읍	교하리 210-2	교하리 263-1	117	1	10	1→24	도로구간 축소·변경		
변경 후	역 선 3 걸	ੱ ਹੋ ਜ਼	교하리 264-5	교하리 263-1	109	1	10	1→22	축소·변경		



구분	도로명	행정구역			변경사유				
一工正	<u> </u>	8874	기점	종점	길이(m)	폭(m)	기초간격(m)	기초번호	건경시뉴
변경 전	도양새우등길	대지면	구미리 382-1	효정리 852-1	985	6	20	1→100	도로구간
변경 후	- 프랑제구 등 걸	네시킨	구미리 611	효정리 817-3	980	6	20	1→100	경미한 변경



창녕군 공고 제2024 - 779호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창 녕 군 수

1. 자치법규명

○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경쟁 및 소비자권익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역 시장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인용 조문 변경(안 제12조, 제21조)
- 나. 조문 제목 및 내용 정비(안 제13조)
- 다. 별지 서식 변경(안 별지 서식 제1호~ 제6호)

-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5. 입법예고 기간: 2024. 4. 29. ~ 5. 22.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녕군수 (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1) 우편: (우)5031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녕군청 일자리경제과
- 2) 팩스: 055-530-1690
- 3) 메일: kje94@korea.kr
- 4) 직접방문
- 라. 그 밖에 자세한 시항은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탐(전화: 055-530-169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시시합미인 네공 -	찬성	반대		긴	41-14

창녕군 조례 제 호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녕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녕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을 "(구매 및 판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본청·직속기관·읍·면에서 물품·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의 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을 "「지 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신청서

※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만 해당되며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어야 됩니다.

<u> ※ 상영고</u>	소개 중소	<u> 기업반</u>	애당	되면 :	신성일	연시	1 시방제	세압액	기 없어야 됩	44.
	업 체 명							대표자		(남/여)
	소 재 지									
	종업원수		ī	경(남	/여)	주 성	생산품		
기업체		부 사					담	직 위		
현황	연 락 처	전 호					당	성 명		
		팩 스	2				자	휴대폰		
	홈페이지						이메일			
	참가실적	최초	.신청	(),	참가(=	국내?	전시	회, 국의	의 회)	
전시회	전시회명									
(박람회)	개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역	일(일간)	
(¹	개최장소									
- 사업	참가품목									
	참가부스			부	스	총	면적		m²	
계획서	참가목적				'			1		
	신청금액	급					(₩	,)	
	항목			집행니	1) dd			재원	년내역 -	
사업비	8 7			н % '	11 7		계	군비	자체	기타
집행계획										
Д 0 / 11										
						+				
r ali a	그 리시처 [= -1 O	1 171	ラコ	حال الم	ا ا	ر ا (ادم	1110110	<u> </u>	મને <u>નો</u>
1 상당 	군 기업활동									따라
	전시(박	담)회	잠가	見る	全古 ス	원선	신정서들	는 제술인	나다.	
				년	월		일			
		것	·청연] 업	체명 :					
					표:			(서명	또는 인)	
 	1 人 기의			41	. حلك			(~1 0	<u> т</u> с с)	
'ও 'ত য	· 수 귀하									
※ 첨부서	귀류 : 사업ス	·등록	증사분	분 1투	<u>1</u> .					
I										

[별지 제2호 서식]

	전시(박	박람)호	引	참가	보크	조금 정식	산서	
	업 체 명					대표자		(남/여)
업체현황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 시 회	전시회명							
	참가품목							
(박람회)	참가부스			부.	스	총 면 적		m²
참가개요	부스임차료			원		총참가비		천원
	상담건수			건		상담금액		백만원
활동성과	계약건수			건		계약금액		백만원
	방문자수			명		바이어수		명
차회 동종 전	시회 참가여부	참 가		미참가		미참사유		
전시회참가				1		1		
자체평가								
제품에 대한								
바이어 및								
시장 반응								
주요성과 계약내용								
에로·건의								
개도·선거 사항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제출인 업체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

- ※ 첨부서류
 - 1. 보조금 정산서 1부.
 - 2. 전시(박람)회 부스임차료 지급 관련 증명서류 각 1부.(원본대조필)
 - 3. 전시(박람)회 참가증빙 사진 2매(원본대조필)
 - 4.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원본대조필)
 -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어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 - 로자	전입	 일정 ^초	각 구	금 지원다	개상	추	천서	
기 업 명			대	표자		(L	計/여)	업	종	
소 재 지	(본사)							전호	라번호	
	(공장)							전호	하번호	
소 속 근 로 자		근로자	수 			관내거	주			관외거주
ㄴ 또 ^\ 거주현황			명				명			명
	성 명					(남/여)	,	생년윝	일	
ᄎᆌᆌᄮ	주 소						7	전화반	호	
추천대상	7 32						7	후 대	폰	
	소 속			직책	1			입 연월 ⁹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년 월 일 업체명 (인)

창 녕 군 수 귀하

(앞면)

		근로자 전	선입정츠	남금 지	원신청/	서			
	주 소	경남 창녕군	음·단	<u> </u>					
신 청 인	성 명	(۲	計/여)	생년월일	1				
	전화번호	(자택)	·	(휴대건	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	좌번호			Ġ.]금주		
	관계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직 역	겁	전입일자
전입가족 현 황									
	, 기원미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	-택	기타
	주거형태								
	, O 기	매매	전세		월세		기타		
참고사항	소유권								
	자동차	차 명	연식		배기량		기ㅌ	}	
	소 유								
	개인정보취급 동의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뒷면 작성)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주십시오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대상 추천서 1부.

- 2. 소유권 증명서류(전·월세 및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1부.
- 3. 신청자 등본 및 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1부.
- 4. 세대원 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각 1부.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창녕군 인구증가시책(기업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예금주명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창녕군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앞면)

			근로	아 전	입지	원금	지원신청/	서		
신	주	소	경남 창1	경군	읍 •	면				
청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인	전화	번호	(자택) (휴대전화)							
	입금계	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참	주거	청미	단독주	·택	아	파트	다세대주택	기	숙사	기 타
고	771	3 41								
사 항	자동	동 차	차량번	호	え	나 명	연식	배	기량	기 타
् <u></u>	소	유								

소속 기업 추천서										
기업명	대표자	(남/여)	업 종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년월일업체명(인)

개인정보취급 **개인정** 동의여부 **인구경** (뒷면 작성) **시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 시오.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창녕군 인구증가시책(기업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예금주명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창녕군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거부하 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ታ	동단*	등	전입	립장	려금	구기원	년신청/	서		
	주	소	경남 청	상녕군		읍.민	브					
단	대 표	자			(남/	/여)	생년	년월일				
체	전화번	호	(사무실))		·		(휴대전	[화)			
명	회 원	수			명		주	소 지	관내	명,	관외	명
	전입실	적			세디	H(기-	구)		명 (명단	별첨	작성)	
	입금계좌		금융기관	<u> </u>		계좌	번호			예금	주	
					소	속 フ	입					
기입	념명			대표자			(남/	남/여) 업 종				
소지	내지 (본사)						전	화번호			
동	정보취급 의여부 면 작성)								에 따라 뒷 동의서를 ^조			동단체
	창녕군 기 장려금 지					한 <i>조</i>	례」저	19조제3	}항제 4호 ∘	에 따라	· 노동단	체 등
				20	년	<u>.</u>	월	일				
	신청단기	체명		직	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창	녕군수	귀	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창녕군 노동단체 등 전입장려금 지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노동단체 등 전입장려금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창녕군 근로자단체 전입장려금 지원 대 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안 제12조(자금 특례지원) ① 군수는 다 제12조(자금 특례지원)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창녕군 중소기 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례 지원 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2)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창녕군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자금 지원 조례」-----다. --. 제13조(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① 군 | 제13조(구매 및 판로 지원) ① 군수는 수는 군의 실·과·사업소·읍· 본청ㆍ직속기관ㆍ읍ㆍ면에서 물품 · 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면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 하여야 내의 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 한다. 해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제21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제21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각 호를 위반한 경우
- 2. ~ 6. (생략)
- ③ (생략)

 	 	_	

- 관한 법률」제12조1항 ----
- 2. ~ 6.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

※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만 해당되며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어야 됩니다.

₩ 00T	23/1 225 1	3인 예정퍼머	신생된	선세	시장에	세권	401	野へし	1944
	업 체 명					대표	E자	(۲	計/여)
	소 재 지								
	종업원수	명(남	/여)	주	생산	품		
기업체		부 서			담	직	위		
	연 락 처	전 화			당	성	명		
현황		팩 스			자	휴디	ㅐ폰		
	중레시키				이메				
	홈페이지				일				
	참가실적	최초신청(), 참기	가(국	내전시		회,	국외	회)
전시회	전시회명	,							,
(박람회)	개최기간	년	월	일 ~	ı	년	월	일(일간)
	개최장소								
참가	참가품목								
사업	참가부스		부스	-	총 면	적			m²
계획서	참가목적								
	신청금액	금				(₩)
	중), 무	7] %]] (d			ス	H원ι	개역		
사업비	항목	집행내역	계		บั	7 비		자체	기타
집행계획									
によれい	느 이이 가이	저 시 (바라)	히세 3	トフしき	L 77 7L	기의	ユ٥	. 시처	öhılırl

당사는 위와 같이 전시(박람)회에 참가하고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대 표:

(인)

창 녕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전시(박람)희	참가]	보조금	정산서				
	업 체 명				대표자	(남/여)			
업체현황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 시 회	전시회명								
(박람회)	참가품목								
1 '	참가부스		1	쿠스	총 면 적	m²			
참가개요	부스임차료			원	총참가비	천원			
	상담건수			건	상담금액	백만원			
활동성과	계약건수			건	계약금액	백만원			
	방문자수			명	바이어수	명			
치회 동종 전시	회 참기여부	참 가	미침 가	H	미참사유				
전시회참가 자체평가		'							
제품에 대한 바이어 및 시장 반응									
주요성과 계약내용									
애로·건의 사항						_			
당사는 역	당사는 위와 같이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당사는 위와 같이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제출인 업체명:

대 표:

(인)

창 녕 군 수 귀하

- ※ 첨부서류
 - 1. 보조금 정산서 1부.
 - 2. 전시(박람)회 부스임차료 지급 관련 증명서류 각 1부.(원본대조필)
 - 3. 전시(박람)회 참가증빙 사진 2매(원본대조필)

 - 4.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원본대조필)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어야 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신청서

※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만 해당되며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어야 됩니다.

^ 00₺	11 011 11	크린 에 0~~~		'''	10 1	" "	4 1 1	P/ 1 1	ы і і
	업 체 명					대3	표자	(님	-/여)
	소 재 지								
	종업원수	명(남	/여)	주	생산	품		
71 AJ 21		부 서			담	직	위		
기업체	연 락 처	전 화			당	성	명		
현황		팩 스			자	휴፣	내폰		
	중에시하				이메				
	홈페이지				일				
	참가실적	최초신청(), 참가(국	내전시	 	회,	국외	회)
전시회	전시회명	,	,						,
(박람회)	개최기간	년	월 일	~	ı	견	월	일(일간)
	개최장소								
참가	참가품목								
사업	참가부스		부스	2	총 면	적			m²
계획서	참가목적								
	신청금액	금				(₩))
	항목	집행내역			Z	H원1	내역		
사업비	% †	~~~~	계		์ ป	건비		자체	기타
집행계획									
				T					
						-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 표: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전시(박람)호	1 참	가 보	조금	· 정산서		
	업체 명					대 표 자		(남/여)
업체현황	소 재 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 시 회	전시회명							
(박람회)	참가품목							
, ,	참가부스			부	스	총 면 적		m²
참가개요	부스임차료			-	원	총참가비		천원
	상담건수			;	건	상담금액		백만원
활동성과	계약건수			;	건	계약금액		백만원
	방문자수			1	경	바이어수		명
차회 동종 전시	회 참가여부	참 가		미참 가		미참사유		
전시회참가						•		
자체평가								
제품에 대한 바이어 및								
시장 반응								
주요성과 계약내용								
애로·건의 사항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위 제출인 업 체 명 :

대 丑. <u>(서명 또는 인)</u>

창 녕 군 수 귀하

- ※ 첨부서류
 - 1. 보조금 정산서 1부.
 - 2. 전시(박람)회 부스임차료 지급 관련 증명서류 각 1부.(원본대조필)
 - 3. 전시(박람)회 참가증빙 사진 2매(원본대조필)
 - 4.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원본대조필)
 -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어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근로지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대상 추천서									
기 업 명		디	州 丑 ス	\	(남/	'여)	(업 종	<u>\$</u>		
소 재 지	(본사)	•					전	화번	호		
	(공장)						を	화번	호		
	근	로자수		관내거주				관외)		거주	
소 속 근 로 자 거주현황		Ę	}				명				뀽
	성 명			(i	計(여)	생	년원	일일			
추천대상	주 소					_	화 : 대				
	소속		직	책			입 견월				

상기 인을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창녕군 기업 근로자 전입정착금 ______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년 월 일

업체명 (인)

창 녕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창녕군	- 기업는	그로자 전	1입정2	학금 지	워신	청서		
	주 소	경남 창		- n o 음·면	1 - 1		. 0 1		
신 청 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택)	·	(許	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주		
	관계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직	업	전입일 자
전입가족									
전입가족 현 황									
		단독주티	된 이-3	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타
	주거형태		' '	,	1 " " "	一十	СП		., .,
참고사항	소 유 권	매매	전	.세	월세	\Box	기 E	타	
	자동차	차 명	Qi	식	배기링	ŧ l	7] E	1	
	소 유	1 0			11.10				
개인정 동의 (뒷면	여부		보호법 제15 시책 지원을 9						

「창녕군 기업활동자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창녕군 기업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월 일 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소속 기업의 추천서 1부. 2.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근로자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대상 추천서								
기 업 명		대표	자	(남/여)		(업	종		
소 재 지	(본사)			•		준	화번	호		
호 제 시	(공장)					준	화번	호		
	근토	<u>'</u> 자수		관내거		3	관외기	거주		
소 속 근로자 거주현황		명				명				명
	성 명		(i	計/여)	생	년钅	일일			
÷ -11.11	주 소				전화번호					
추천대상	7 32				휴	대	폰			
	소 속	Z	니 책		ç	입 견월	사 일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월

업체명 (인)

창 녕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앞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신청서										
	주 소	경남	_ 창녕	군 읍	면						
신 청 인	성 명		(님	H(역)	생년월일	일					
	전화번호	(자택)			(휴	대전화	事)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	좌번호				여	금주		
	관계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직	업	전입일 자
정인가족											
전입가족 현 황											
	주거형태	단독주	주택	아파트		다시	ll 대주	택	연립	주택	기 타
		म प	H	전/	네		월세		7]	타	
참고사항	소 유 권										
	자동차	차ᅤ	명	연~	식	배기량		:	기타		
	소 유										
개인정 동의 (뒷면			호법 제15조 네 지원을 위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제5항 에 따라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대상 추천서 1부.

2. 소유권 증명서류(전·월세 및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1부. 3. 신청자 등본 및 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1부. 4. 세대원 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각 1부.

[별지 제4호서식]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창녕군 인구증가시책(기업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 (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때른 불이 내용 또는 제한시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창녕군 인구증기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창녕군 인구증가시책(기업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을 위해 활용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고유 식별정보 항목	<u>주민등록번호</u>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 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창녕군 인구증가시책 지 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인)

[별지 제4호서식]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창녕군 인구증가시책(기업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 (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예금주명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때른 불이 내용 또는 제한시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창녕군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삭 제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법정대리인 동의세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u>(서명 또는 인)</u>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П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창녕군 인구증가시책(기업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 (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때른 불의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창녕군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창녕군 인구증가시책(기업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을 위해 활용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중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고유 식별정보 항목	<u>생년월일</u>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 익 내용 또는 제한 시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창녕군 인구증가시책 지 원대상자에서 제와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법정대리인 동의세]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인/서명)

[별지 제5호서식]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١.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창녕군 인구증가시책(기업근로자 <u>전입지원금)</u>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 (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예금주명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때른 불의 내용 또는 제한시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창녕군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삭 제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뿐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세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u>(서명 또는 인)</u>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창녕군 기업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신청서									
신	주 소	경남	창녕	근	읍•	면				
청	성 명			(남/	역) /	생년월일				
인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호	})			
입금계좌 금융 계좌 예금 기관 번호 주										
참	" 수거형태		주택	0)	파트	다세대주 택	기	숙사	기타	
고 사										
항	자동차	차량	번호	ネ	ㅏ 명	연식	배	기량	기 타	
0	소 유									

	소속 기업 추천서										
기업 명		대표자	(남/역)	업 종							
소재 지	(본사)			전화번호							

상기 인을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제20조의3제2항에 따 라 창녕군 기업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 급 동의여부 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 (뒷면 작성) 성해 주십 시오.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창녕군 기업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창녕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창녕군 노동단체 등 전입장려금 지원신청서										
	주	소	경남 건	창녕군		읍·면					
Ι,	대	표 자		(۲	計(여)	생년	월일				
단	전:	화번호	(사무실))			(3	투대전화	화)		
체 명	회	원 수			명	주	소 지	관내	명,	관외	명
	전	입실적		세	대(가	구)		명 (명	단 별	첨 작	성)
ç	입금:	계좌	금융기관	<u>+</u>	계	좌번호			예금주	<u> </u>	

	소속 기업									
기업 명		대표자	(남/여)	업	종					
소재 지	(본사)			전화기	번호					

개인정보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급 동의여부 서식의 노동단체 등 전입장려금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잡이 (뒷면 작성) 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제19조제3항제4호에 따라 창녕군 노동단체 등 전입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앞면)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신청서										
신	주	소									
청	성	명			(남/	여) ^	생년월일				
인	전화병	번호	(자택)				(휴대전호	})			
ç	입금계3	라	금융 기관								
참	주거히	형 태	단독취	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 택	기	숙사	기 타		
고 사											
항	자동	차	차량병	·번호 차 명			연식	배	기량	기 타	
Ů	소	유									

	소속 기업 추천서									
기업 명		대표자	(남/여)	업	종					
소재 지 (·	본사)			전화	번호					
「창녕군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약제2항에 따라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워대사	자로 추천합니다	1								

20 년 월 일

업체명 (인)

개인정보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 급 동의여부 식의 인구중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 (뒷면 작성) **성해 주십 시오.**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u>(서명 또는 인)</u> 신청인

창녕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u>노동단체</u> 등 전입장려금 지원신청서										
	주 소	경남 창내	경군	읍·면							
١,	대표자		(남/여	q) 생년	월일						
단	전화번호	(사무실)			(3	투대전화	丰)				
체 명	회 원 수		Ę	경 주	소 지	관내	명,	관외	명		
	전입실적		세대(가구)		명 (명	단 별	첨 작/	성)		
Ç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u>=</u>			

	소속 기업									
기업 명		대표자	(남/여)	업 종						
소재 지	(본사)			전화번호						

개인정보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급 동의여부 서식의 노동단체 등 전입장려금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잡이 (뒷면 작성) 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제19조제3항제4호에 따라 노동단체 등 전입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단체명

창녕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창녕군 노동단체 등 전입장려금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노동단체 등 전입장려금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 (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창녕군 노동단체 등 전입장려금 지원을 위해 활용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노동단체 등 전입장려금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고유 식별정보 항목	생년월일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 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창녕군 근로자 단체 전입장려금 자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반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세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인/서명)

[별지 제6호서식]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창녕군 노동단체 등 전입장려금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노동단체 등 전입장려금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 (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삭 제

삭 제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u>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u>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창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530-1680)

【관 련 법 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 · 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 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예 규·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삭제 〈2021. 1. 1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창녕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 1.]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640호, **2021. 9. 16., 폐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녕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 2022. 1. 1.]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640호, **2021. 9. 16.,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창녕군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 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공고 제2024-788호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창 녕 군 수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라.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안 제5조)
- 마.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기준(안 제6조)
- 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안 제7조)
- 사. 보조금의 신청, 지급, 반환(안 제8조~제10조)
- 아. 지도점검(안 제11조)
- 4. 제정조례안: 붙임참조
- 5. 입법예고 기간: 2024. 05. 02. ~ 05. 22.(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0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녕군수(참 조: 관광환경국 환경위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우)50317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녕군청 관광환경국 환경위생과
 - 전화: 055-530-1624 (FAX. 055-530-1610)
 - E-Mail: js0054@korea.kr
 -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E-Mail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관광환경국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전화 055-530-16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독	실 조례.
---	-------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시시합규인 대중	찬성	반대	귀 긴		71	

창녕군 조례 제 호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해야 한다.
 - ② 군수는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군수는 감량기기 설치 세대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다만, 신청일 현재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가정용 및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1세대 또는 1사업장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가정용은 최대 30만원, 사업용은 최대 50만원 한도로 한다.
-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기준)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 치·사용해야 한다.
 -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해야 한다.
-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용수거용 기에 배출해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입 또는 설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증명자료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사업주로 한다.
 -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 및 사업장은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 제9조(보조금 지급) ①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반환) ①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해야 한다.
 - ② 군수는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감량기

기를 임의로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해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감량기기 적 정 사용 여부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거주지 □사업	å장 : 경남 창년]군							
	연 락 처		세대주와의 관 계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모델명		제조사								
	종류	□가정용(일일	처리용량 10L	미만) □사업]용(10L c	기상)					
감량기기 구입 및	감량방식	□건조 □발효	조 □발효 □부숙 □미생물액상발효 □기타(
설치내역	인증방식	□K마크 □Q□	마크 □환경표	지 □기타()					
	판매점명										
	설치일시		설치장소								
보조금	구입금액		보 조 금 신청금액								
신청내역	입금계좌	은 행명:	예 금 주 :								
		계좌번호 :		※ 신청인	<u>l</u> 또는 세대	개주 명의 					
		기물 감량기기 위와 같이 음식물		_							
		년	월 일								
		신청인	<u>)</u> :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증명자료)										
1. 사진대	σ ,	י ווגלים או ביים או לאווי	7.미스크 = =	한 교리터 드시	تادادادادا	əl\ 1 H					
2. 구입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구매금액, 구매일자, 판매점명, 모델명 등이 표기되어야 함) 1부.											
3. 품질인	주서 1부										

사진대장

① 제조 명판 사진	② 설치사진(전경사진)
제품에 부착된 명판 사진 첨부 (<u>모델명, 고유번호</u> 등이 보이도록 촬영)	○ 설 치 일 : 제품전체가 나오도록 촬영
③ 실사용 인증 사진	④ 기타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사용 모습 (음식물 투입 및 감량 후 사진 등)	필요시 첨부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창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 창녕군 관광환경국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530-1600)

【관 련 법 규】

「폐기물관리법」

-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 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
 -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 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2019. 11. 26.〉 [제목개정 2013. 7. 1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다. 처리의 경우
 -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2) 삭제 <2014.1.17>

- 3)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야 하며,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법 제 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4)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부숙, 탄화, 소화 또는 부숙토 생산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용도에 맞지 아니한 협잡물(挾雜物)과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 중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삭제 <2011.9.29>
- 7) 삭제 <2011.9.29>
- 8)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유입된 음식물류에 포함된 고형물 중에서 무게 기준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60퍼센트 이상, 2013년 1월 1일부터는 70퍼센트 이상을 동물 등의 먹이, 퇴비 등의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용(에너지 생산, 액비 생산 등을 위하여 다른 시설로 옮겨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공 고

창녕군 공고 제2024-798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일

창 녕 군 수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고려하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반직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안 제2조 별표)

- 현 행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농업 기 <u>술</u> 센터	보건소	回回	면
계	789	406	20	50	80	57	176
3급	1	-	-	-	1	-	1
4급	4	3	-	-	1	-	-
5급	39	17	3	3	2	2	12
6급	205	106	5	16	12	16	50
7급	244	147	7	14	17	15	44
8급	207	91	3	13	38	18	44
9급	88	41	2	3	10	6	26
전문경력관	1			1			

- 개정안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回 回	면
계	789	406	20	50	80	57	176
3급	1	-	-	-	-	-	-
4급	4	3	-	-	1	-	-
5급	39	17	3	3	2	2	12
6급	205	106	5	16	12	16	50
7급	244	147	7	14	17	15	44
8급	220	102	3	13	40	18	44
9급	75	30	2	3	8	6	26
전문경력관	1			1			

4. 관련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녕군수 (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1) 우편: (우)5031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녕군청 행정과
- 2) 팩스: 055-530-1210
- 3) 메일: sisem7896@korea.kr
- 4) 직접방문
-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행정과 행정팀(전화: 055-530-12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이	견 비		
사시합표한 대중	찬성	반대	· 의	긴	비고	

창녕군 규칙 제 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이히	직속7	기관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농업기술 센터	보건소	ᅌ	면
	총계	820(2)	414(2)	20	73	80	57	176
	정무직 합계	1	1	0	0	0	0	0
7	성무	1	1					
	일반직 합계	789(2)	406(2)	20	50	80	57	176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4	3			1		
	기술서기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3	3					
	5급 소계	39	17	3	3	2	2	12
	행정	4	3	1				
	의무	0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녹지	1	1					
	행정・시설	5	5					
	농업・농촌지도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0	0					
	행정 · 공업 · 환경	1	1					
	행정 • 공업 • 시설	2	2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1			1			
	행정·보건·환경	0	0					
	행정·환경·시설	0	0					
	농업・수의・농촌지도	1			1			
	행정 • 사회복지 • 농업 • 보건	1		1				
	행정 • 사회복지 • 농업 • 시설	6					2	4
	행정 · 공업 · 농업 · 환경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 · 농업 · 녹지 · 보건	1						1
	행정・농업・녹지・환경	0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80000111111111	1						1

				직속7	기관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농업기술 센터	보건소	음	면
행정·농업·보건·시 설	0					0	
행정 · 농업 · 보건 · 환경	0						0
행정 • 농업 • 보건 • 의료기술	1						1
행정·농업·의료기술·시 설	1						1
행정 • 농업 • 환경 • 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의료기술·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	1				1		
6급 소계	205	106	5	16	12	16	50
행정	26	23	3				
사회복지	1	1					
속기	1		1				
공업	2	2					
농업	1			1			
녹지	2	2					
보건	1	1					
보건진료	4				4		
시설	8	7				1	
운전	3	1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0						
행정·세무	6	5				1	
행정・사회복지	11	7				1	3
행정 · 속기	0		0				
행정 • 공업	2	2					
행정・농업	14	2				4	8
행정・보건	3				2		1
행정・환경	0	0					
행정・시설	25	24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1					1	
공업・농촌지도	1			1			
농업·수의	3			3			
농업・농촌지도	4			4			
보건・간호	2				2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5					1	4

			이취	직속7	기관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농업기술 센터	보건소	음	면
행정 • 전산 • 농업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 • 전산 • 방송통신	3	2				0	1
행정・사회복지・공업	3					1	2
행정・사회복지・농업	9					1	8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 • 공업 • 농업	5	1					4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공업·환경	3	3					
행정・농업・녹지	0						0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5	3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3			3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보건・환경	2	2					
행정・환경・시설	2	2					
행정・환경・농촌지도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5	1			4		
행정·세무·농업·녹 지	3					1	2
행정·세무·농업·시 설	11						11
행정·사회복지·농업·환 경	2					2	
행정·사회복지·보건·의료 기술	6	1				1	4
행정 · 농업 · 환경 · 수의	2	2					
7급 소계	244	147	7	14	17	15	44
행정	41	36	3			1	1
세무	2	2					
사회복지	12	6				2	4
전산	1	1					
공업	6	5		1			
농업	3			3			
녹지	2	2					
보건	4				4		
보건진료	4				4		
간호	3				3		
시설	19	13				1	5
운전	5	4	1				
건축운영	1	1					

			이취	직속7	기관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농업기술 센터	보건소	ㅂ	면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3		1				2
행정・세무	12	8				1	3
행정・사회복지	10	4				3	3
행정·속기	1		1				
행정・전산	7	6	1				0
행정 · 공업	2	1				1	
행정·농업	26	2		1		2	2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3	2			1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33	28		1	1	1	2
행정 • 방송통신	1						1
전산 · 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3	3					
공업·시설	3	2				1	
농업·녹지	2					1	1
농업·수의	5	2		3			
농업·시설	2			2			
농업· 농촌지도	2			2			
녹지·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3				3		
보건·간호	1				1		
보건·환경	2	2					
행정 • 전산 • 방송통신	1	1					
행정 · 사회복지 · 공업	1	1					
행정・농업・환경	5	5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농촌지도	1			1			
행정·방재안전·방송통신	1	1					
공업・보건・환경	1	1					
8급 소계	220(1)	102(1)	3	13	40	18	44
행정	13(1)	11(1)	2				
사회복지	16	5				5	6
공업	2			2			
농업	1			1			
녹지	1	1					
보건	3				3		

			Q 최 직속기관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농업기술 센터	보건소	日	면
보건진료	6				6		
의료기술	7				7		
간호	2				2		
시설	19	10				2	7
운전	5	3		1	1		
기계운영	0	0					
행정・세무	9	6				2	1
행정・사회복지	13	7					6
행정・사서	2	2					
행정・속기	1		1				
행정·전산	2	2					
행정 • 공업	1	1					
행정·농업	17	2		1		4	10
행정・보건	4	2			2		
행정·간호	1	1					
행정·환경	5	3				2	
행정・시설	35	27		1		1	6
행정 · 방재안전	2	2					
행정 · 방송통신	1	1					
전산 · 방송통신	0						
공업·환경	0						
공업·시설	2	2					
농업·보건	2			2			
농업・농촌지도	2			2			
녹지・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6				6		
보건・간호	23				13	2	8
환경ㆍ시설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7	5		2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환경・시설	2	2					
9급 소계	75(1)	30(1)	2	3	8	6	26
행정	4(1)	3(1)	1				
사회복지	6	0				1	5
녹지	1	1					
보건	3				3		
시설	0	0					
운전	2	1			1		

			본청	이상	직속기관			
	구분			의회 사무과	농업기술 센터	보건소	ㅂ	면
	사무운영	0	0					
	행정·세무	7	2				0	5
	행정・사회복지	19	3				2	14
	행정・사서	0						
	행정・속기	0		0				
	행정·전산	0	0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7	1		2		2	2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0			0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4	13				1	
	전산·방송통신	3	2	1				
	공업 · 농업	1			1			
	공업 · 시설	0	0					
	보건・의료기술	4				4		
	환경·시설	0	0					
	시설 · 방재안전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0						
	전문경력관 나군 소계	1			1			
	농기계 수리·교육	1			1			
	별정직 합계	1	1	0	0	0	0	0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연구직 합계	6	6	0	0	0	0	0
	연구사 소계	6	6					
	학예연구	5	5					
	기록연구	1	1					
	지도직 합계	23	0	0	23	0	0	0
	지도관 소계	2			2			
	농촌지도	0			0			
	행정・농업・농촌지도	1			1			
	행정 · 농업 · 시설 · 농촌지도	1			1			
	지도사 소계	21			21			
	농촌지도	21			21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신 · 구조문대비표

혂 아 개 정 【별표】 【별표】 정원관리 기관병·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속기관 직속기관 기관별 의회 기관별 의회 농업 기술 농업 보 보 총계 본청 사무 총계 본청 사무 면 읍 면 읍 건 건 직급 • 직렬별 과 직급 • 직렬별 과 센터 센터 소 820(2) 414(2) 820(2) 414(2) 총계 20 73 80 57 | 176 총계 20 73 80 57 176 20 176 일반직 합계 789(2) 406(2) 50 57 176 일반직 합계 789(2) 406(2) 57 80 80 39 17 3 3 2 2 12 39 17 3 3 2 2 12 5급 소계 5급 소계 행정 • 공업 • 시설 1 행정 • 공업 • 시설 2 행정 • 환경 • 시설 행정 • 환경 • 시설 1 1 0 6급 소계 205 106 5 16 12 16 | 50 6급 소계 205 106 5 16 12 16 50 27 3 26 23 3 행정 24 행정 기계운영 0 0 기계운영 행정 · 농업 9 행정 · 농업 8 14 1 14 4 행정 • 시설 26 25 1 행정 • 시설 25 24 1 행정 • 세무 • 농업 6 1 <u>5</u> 행정 • 세무 • 농업 1 4 <u>5</u> 일 행정 • 전산 • 방송통신 행정 • 전산 • 방송통신 3 1 0 반 반 행정 · 사회복지 · 공업 1 1 0 행정 • 사회복지 • 공업 3 1 2 직 직 행정 • 사회복지 • 농업 0 8 행정 • 사회복지 • 농업 8 행정 • 농업 • 녹지 1 행정 • 농업 • 녹지 0 7급 소계 7 7급 소계 244 147 14 17 15 44 244 147 7 14 17 15 44 행정 42 36 4 1 1 행정 41 36 3 1 운전 운전 4 <u>5</u> 1 기계운영 0 기계운영 2 사무운영 사무운영 1 1 3 1 2 행정 · 세무 14 9 3 행정 · 세무 12 3 행정 • 사회복지 9 3 3 3 행정・사회복지 3 3 10 4 행정 • 전산 7 5 1 1 행정 • 전산 7 6 1 0 행정 • 공업 1 1 0 행정 · 공업 1 행정 · 농업 2 행정 · 농업 1 22 2 1 <u>21</u> 2 행정・시설 행정・시설 33 28 1 1 28 1 1

	현				행					개		정		안			
직급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 과	직속 농업 기술 센터	기관 보 건 소	읍	면	직급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 과	직속 농업 기술 센터	기관 보 건 소	읔	면
					_ ,												
	행정・농업・환경	6	6							행정 • 농업 • 환경	<u>5</u>	<u>5</u>					
	8급 소계	207(1)	91(1)	3	13	<u>38</u>	18	44		8급 소계	220(1)	102(1)	3	13	<u>40</u>	18	44
										•••							
	운전	<u>3</u>	1		1	1				운전	<u>5</u>	<u>3</u>		1	1		
	기계운영	1	1							기계운영	0	0					
	•••																
	행정・사회복지	9	3					6		행정・사회복지	13	7					6
	•••									•••							
	행정・보건	2	2			0				행정・보건	4	2			2		
	•••									•••							
	행정・시설	30	22		1		1	6	-	행정・시설	<u>35</u>	<u>27</u>		1		1	6
	•••									•••							
일	행정·농업·환경	<u>6</u>	4		2				일	행정·농업·환경	<u>7</u>	<u>5</u>		2			
근	•••									•••							
반	9급 소계	88(1)	<u>41(1)</u>	2	3	<u>10</u>	6	26	반	9급 소계	<u>75(1)</u>	30(1)	2	3	<u>8</u>	6	26
직	행정	<u>5(1)</u>	<u>4(1)</u>	1					직 -	행정	<u>4(1)</u>	3(1)	1				
'	사회복지	7	1				1	5		사회복지	<u>6</u>	0				1	5
										···					1		
	운전	4	3			1				운전	2	1			1		
	사무운영 	1	1							사무운영	<u>0</u>	<u>0</u>					
	··· 행정·사회복지	22	6				2	14		··· 행정·사회복지	19	3				2	14
	%%・バ <u>昇</u> ギハ	<u> </u>	<u>o</u>					14			10						14
	 행정・농업	8	2		2		2	2		행정ㆍ농업	7	1		2		2	2
			_ =								<u> </u>	_=_				_	
	행정・환경	2	2				0			행정・환경	1	1				0	
	행정ㆍ시설	<u>16</u>	<u>15</u>				1			행정・시설	14	13				1	
	전산 · 방송통신	2	1	1						전산 · 방송통신	3	2	1				
	•••									•••							
	보건・의료기술	<u>6</u>				<u>6</u>				보건・의료기술	<u>4</u>				<u>4</u>		
	•••									•••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2. 삭제 <2020. 3. 10.>
 -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 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 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창녕군 공고 제2024-799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일

창 녕 군 수

1. 자치법규명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청 과장 직급의 변경 등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본청 과장 직급 정비(안 제3조)

직 위	직급 조정 사항	비고
관광체육과	행정, 환경 , 시설	부서 업무 고려
일자리경제과장	행정, <mark>공업</mark> , 시설	에너지분야 업무비중 고려

4. 관련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녕군수 (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1) 우편: (우)5031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녕군청 행정과
- 2) 팩스: 055-530-1210
- 3) 메일: sisem7896@korea.kr
- 4) 직접방문
-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행정과 행정팀(전화: 055-530-12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킨킨버그아 네요 ************************************		의 견		비고	
사시합표한 대중	찬성	반대	· 의	긴	비끄	

창녕군 규칙 제 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광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를 "관광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를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장·담당관·단장·과장 등의 직급)	제3조(국장·담당관·단장·과장 등의 직급)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광환경국: 관광환경국장은 지방	2. 관광환경국:
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	
하고, <u>관광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u>	, 관광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
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	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u>사무관으로</u> ,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	
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	
방공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	
무관으로, 우포생태따오기과장은 지	
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3. 건설산업국 : 건설산업국장은 지	3. 건설산업국 :
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교통과장은 지방시설사	
무관으로, <u>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u>	,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
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	방시설사무관으로,
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치수과	
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	
사무관으로, 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	
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	
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